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224 명예훼손
피 고 인 서영자 (*****-2*****), ○○○
주거 부산 사하구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이하 생략
검 사 김지아(기소), 강정은, 김규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다영(국선)
판 결 선 고 2021. 11. 1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¹⁾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다대로***번길 **에 있는 ○○ 상가 지하에서 ‘○○○ ○○’라는 상호로 정육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7. 15:00경 위 상가의 월례회의를 마친 후 같은 상가 지하 복도

1) 검사가 2021. 8. 17.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허가하였다.

에서, 위 상가 상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 ○○’을 운영하는 피해자 이○○(여, 62세)에 대하여 “○○ ○○ 사장이 미납된 관리비 1,700만 원을 납부하지 않고, 관리비 돈을 다 해 먹었다.”라고 외치고, 곧바로 2층에 있는 ‘○○미용실’에 올라가 그곳 업주인 ○○에게 피해자의 관리비 미납용지를 보여주며 “○○ ○○ 사장의 관리비 미납금이 천여만 원이 넘는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 등 참조).

2)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게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상가 지하 복도에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하고, 이어서 상가 2층으로 올라가 ○○에게 재차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각 행위별로 살펴본다.

2) 먼저 피고인의 첫 번째 명예훼손 발언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이 사건 당시 상가 지하 복도에서 말다툼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 사장이 미납된 관리비 1,700만 원을 납부하지 않고 관리비 돈을 다 해먹었다”고 외쳤고 그 주변을 지나가던 ○○○과 피해자의 가게에 있던 ○○○이 이를 들었다’라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이하에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관리비 미납 발언’이라고만 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일부 법정진술, ○○○의 진술서, 수사보고(순번 18)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상가 지하 복도에서 공소사실 기재 발언과 같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다거나 그 내용을 큰소리로 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의 관리비 미납 발언을 들었다고 하는 신경란은 그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관리비 1,700만 원” 정도의 단어를 들었을 뿐, 그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듣지 못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관리비 미납 발언을 들은 사람으로 주장한 ○○○은 기록상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들었는지 알 수 없고, 피해자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먼 거리에서 자세히는 못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상가 지하 복도에서 싸울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관리비 미납 발언을 하는 것을 신경란이 지나가면서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지나가면서 관리비 미납 발언을 하는 것을 ○○○이 듣고 피해자에게 말해주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가 따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해당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상황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의 진술도 마찬가지로 일관되지 않다. 이렇듯 피고인의 관리비 미납 발언 경위와 상황을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고,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해당 발언을 큰소리로 말

하여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다음으로 두 번째 관리비 미납 발언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의 일부 법정진술, ○○의 진술서, 수사보고(순번 19)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을 찾아가 ‘피해자의 미납 관리비가 1,200여만 원에 이른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알 수 있는 ○○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전에 갖고 있던 관련 정보, ○○의 피고인에 대한 태도, 실제로 ○○이 피고인의 발언을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피고인의 관리비 미납 발언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의 발언에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 ○○은 피해자와 상당한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이 자신에게 서류를 들고 와 피해자의 미납 관리비가 1,200여만 원에 이른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직접 말하였고 그와 같은 취지로 피해자에게 진술서도 작성해주었다. ○○의 진술서 작성일자는 2020. 7. 27.로서 ○○은 이 사건이 있고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 사실을 이야기해준 것으로 보인다.

나) ○○은 ‘피해자가 미납 관리비를 모두 납부하였고 그 사실이 상가 게시판에 공지되었음에도 피고인이 함부로 관리비 미납 발언을 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바, 피고인의 관리비 미납 발언이 사실과 다름을 사전에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비판적인 태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거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이진아 _____